
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

2021. 8. 10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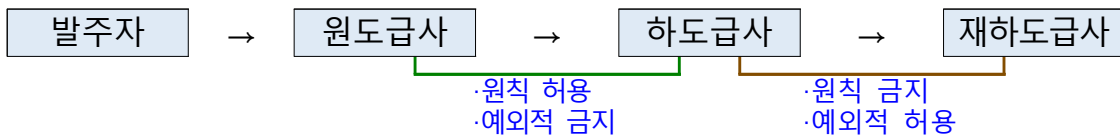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| 1 |
| II. 불법하도급의 문제점 | 2 |
| III. 불법하도급 원인분석 | 3 |
| IV.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| 5 |
| 1.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| 6 |
| 2.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| 8 |
| 3. 시공사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·견제 유도 | 11 |
| V. 향후 추진일정 | 13 |

I. 추진 배경

①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

- (전문화) 다수의 세부 공사가 결합된 전체공사를 1개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공종별 전문업체가 참여
 - (비용절감) 수주산업*인 건설업은 하도급을 통해 생산요소(근로자, 장비, 자재)를 필요한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하여 고정비용 절감
- * 수요자(발주자)의 주문(발주)에 따라 생산(건설)이 이루어지는 산업

② 다단계 하도급 차단을 위해 하도급 허용범위를 제한



- (하도급) 원도급사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 허용하되 시공역량 없는 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예외적으로 금지*
- * (예외금지)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, 동일 업종 간 하도급, 무자격자에 하도급
- (재하도급)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*하고, 재재하도급은 불허
- * 발주자 승낙을 받아 신기술·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%까지 허용

③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이 보편화

- (현장실태) 불법하도급은 공모를 통한 이면·구두계약으로 적발이 곤란하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평가
- (적발현황) 최근 재개발·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·지자체 특별점검(7.1~22)에서는 총 13개 현장(10%)에서 불법하도급 적발

< '18~'21.6월 불법하도급 처분건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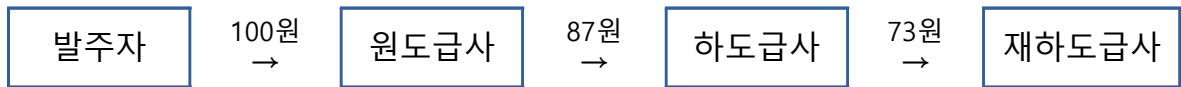
| 계 | 무자격자 하도급 | 일괄하도급 | 동종하도급 | 재하도급 |
|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509건 | 364건 | 79건 | 36건 | 30건 |

II. 불법하도급의 문제점

□ 불법하도급의 폐해

- ① (공사비 누수) 정상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,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.2% 수준으로 도급과정에서 약 27% 삭감(‘20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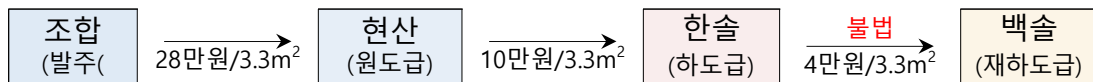
< 정상적인 하도급 과정 >



- 불법하도급의 경우 공사비 누수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며, 실제로 광주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84% 삭감

< 광주 붕괴사고 사례(사조위 결과) >

-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공사비는 3.3㎡당 28만원이었으나, 하도급→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%인 3.3㎡당 4만원에 시공



- ② (부실시공)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·품질 저하 유발

- ③ (사고위험 증가) 부실시공은 건설안전사고 위험으로 연계

- 광주 붕괴사고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작용(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)

□ 그간의 차단 노력

-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*을 추진해 왔으나, 단편적 제도개선으로 인해 현장 이행력이 낮은 실정

*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, 불법하도급시 하도급 참여 제한('18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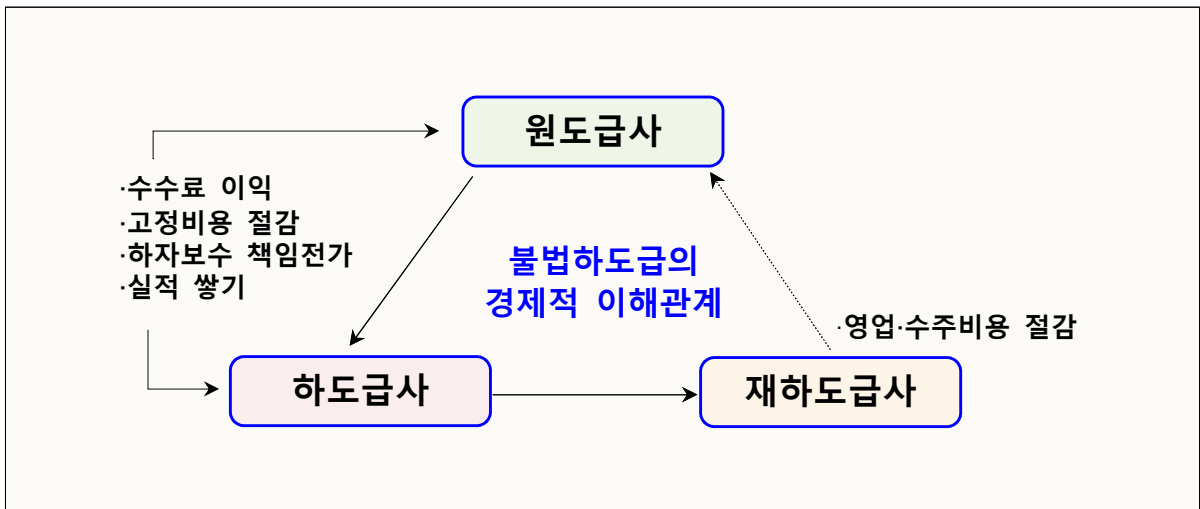
⇒ 불법하도급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 차단대책 마련

Ⅲ. 불법하도급 원인분석

◆ 시공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불법하도급 유인이 상존하는 반면, 발주자의 사전 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적발·처벌은 미흡

① [시공사 관점] 상호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

- (원도급사) 하도급을 통해 조직·인력 직접 운용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과 함께 하자보수 의무 회피·전가 가능
 - 또한, 시공은 수행하지 않고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, 도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중간 수수료로 확보 가능
- (하도급사) 재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사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를 확보 가능하고, 직접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도 경감 가능
 - 또한, 하도급을 통해 타지역·업종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고*, 실제 보유 인력·장비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도 수행 가능
 - * (예시) A지역 소재 업체가 B지역 공사 수주 후 B 지역 업체에 하도급
- (재하도급사)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로서, 입찰을 위한 영업 활동 및 입찰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(수의계약)할 수 있고,
 - 불법하도급이라도 「하도급법」에 따라 도급비용은 보장



② [발주자 관점] 시공사 통제장치 미흡

- 시공사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법하도급 규정을 우회하나,
 - * 도급계약을 물품구매계약, 기계임대계약, 노무계약 등으로 위장하여 적발 회피
→ 원도급사 소속 직원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, 같은 회사 명함을 사용
- 발주자는 해당 하도급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, 불법하도급이 발생해도 공사품질에는 문제 없다는 인식 상존
- 또한 하도급 관리 의지가 있는 발주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뚜렷한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
 - 공공과 달리 민간의 주택·건축공사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현장을 관리·감독하는 감리도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는 상황

③ [인허가청 관점] 적발도 어렵고 처벌과 연계도 미흡

- 시공사간 이면·구두·위장 계약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져서 수사권한이 없는 인허가청으로서는 적발에 한계
- 불법하도급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 부과가 가능하나, 처벌대상이 제한적이고 처벌 수준도 기대이익에 비해 낮은 수준
 - (처벌대상) 원도급사는 지시·공모, 묵인·해태 여부를 행정청이 입증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는 제외
 - (처벌수준)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, 형사처벌*로 연계 미흡
- * 실제로 '17년에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받은 12건 중 형사고발은 4건에 불과

| 구분 | 처벌내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형사처벌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|
| 영업정지·과징금 |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 상당 과징금 |
| 과태료 | 500만원~2,000만원 이하 |

IV. 불법하도급 차단방안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<p>목표</p> | <p>불법하도급 차단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</p> | |
| <p>전략</p> | <p>불법하도급의 「이익 > 비용」 → 「이익 < 비용」 전환</p> | |
| <p>과제</p> | <p>사전차단과 사후처벌을 강화하고, 시공사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구조 차단</p> | |
| <p>세부 과제</p> | <p>[사전 차단↑]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 ②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④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|
| | <p>[사후 처벌↑]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특별사법경찰 도입 ②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③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④ 등록말소 확대(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) 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|
| | <p>[경제적 이해관계↓] 시공사간 상호 감시·견제 유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사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청구 ②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제도 도입 ③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④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|

1. [사전 차단↑]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

①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(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)

- (현황) 공공공사 및 민간 토목공사는 감리에게 하도급 적정성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, 민간 주택·건축 감리는 시공감독만 수행
 - 민간 발주자는 건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하도급 관리 곤란
- (개선) 민간 주택·건축공사도 감리가 하수급자의 자격 적정성 등 하도급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의무 부과
 - 아울러, 위반사항 발생시 사업계획 승인권자(지자체)에 통보하고, 지자체는 공사중지,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명령

②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(건설법 및 시행령 개정)

- (현황)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괄·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
 -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(전체 공공공사 금액의 27%)는 입찰 시 현장 대리인 명단을 제출받고, 기술평가 요소로 활용
 - * 낙찰 이후 기술인 변경 시 발주자 사전동의 등 엄격히 관리 중
- (개선) 1억원 이상 모든 공사(전체 공사 금액의 94%)는 계약서에 현장 대리인 투입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키스콘 공사대장 신고에 반영
 - * 현재도 1억원 이상 공사는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

| 구분 | 현행 | | 추가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제출대상 | 입찰서류 | 공사대장 | 계약서 |
| 대상공사 | 공공공사 | 공공+민간 | 공공+민간공사 |
| 공사범위 | 100억원 이상 | 1억원 이상 | 1억원 이상 |

- 기술인 채용정보(고용보험 고유식별정보)도 키스콘*에 제공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청이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

* 건설산업정보시스템(KISCON :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)

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(건설법 시행령 개정)

- (현황) 1명의 기술인(현장 대리인)이 3억원 미만 현장은 3개, 3~5억 미만 현장은 2개까지 중복하여 관리 가능('18년까지는 5억 미만 3개)
- 이로 인해 기술인의 현장관리 능력을 넘어선 과다수주가 발생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연계
- (개선) 5억 미만 공사는 기술인 중복배치를 2개 현장으로 축소

< 기술인 1인당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 수 >

| 공사예정금액 | '18년 | ⇒ | 현행 | ⇒ | 개선 |
|--------|------|---|----|---|----|
| 5억 이상 | 1개 | | 1개 | | 1개 |
| 5~3억 | 3개 | | 2개 | | 2개 |
| 3억 미만 | | | 3개 | | |

④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(인센티브 마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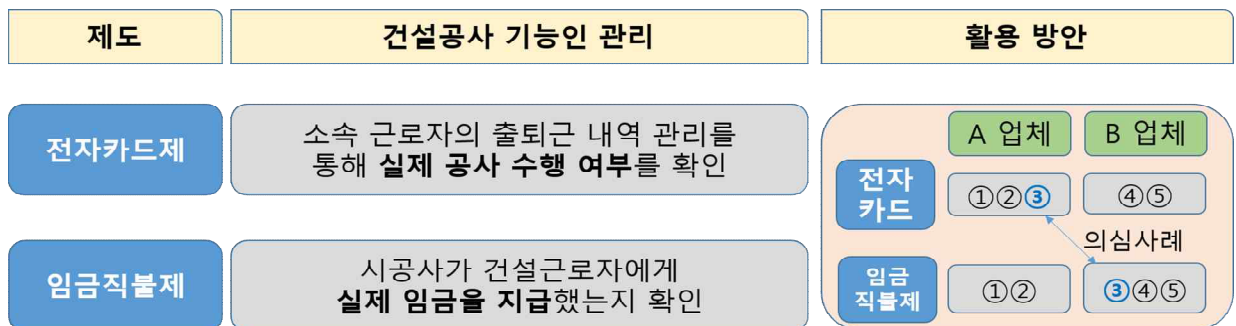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불법하도급 적발을 위해서는 고용계약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, 비정규직·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정보 수집에 한계
- (개선) 임금직불제* 및 전자카드제(출퇴근 내역 관리)**를 조기 확산하고, 키스콘과 연계하여 현장별 기능인 현황 파악 강화

* 전자적 임금지불로 공사대금 유용을 차단(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적용 중)

** '20.11월 공공 100억, 민간 300억 이상 → '24.1월 공공 1억, 민간 50억 이상

- 임금직불제는 민간공사로 확대('22.上)*하고, 노·사·정 논의를 거쳐 '24년 전자카드제 조기 확대시행 추진

* 노무비닷컴 등 민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우수기업 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



* (전자카드제) A업체 소속 ↔ (임금직불제) B업체 소속 ⇒ 불법하도급 의심·점검

2. [사후 처벌↑]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

① 특별사법경찰 도입(사법경찰직무법 개정)

- (현황) 불법하도급 단속은 건설산업정보시스템(KISCON)에서 매월 지자체에 의심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가 조사하나,
 - 압수수색 등 권한 없이 서류 확인만 가능하여 적발에 한계
- (개선) 국토관리청(공정건설지원센터)과 지자체(인허가청)에 특별사법경찰관(100명 내외)을 부여하여 수사기능 강화

②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(국가계약법 및 건산법 개정)

- (현황) 불법하도급 업체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4개월~1년 내에서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 제한(국가계약법) 및 하도급 참여 제한(건산법)
 - * 관련 법률에서는 최장 2년까지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제한 허용
- (개선) 제한대상을 불법 하수급사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사로 확대하고, 제한기간도 법정 최대인 2년까지 확대

< 국가계약법상 원도급 참가 제한 >

| 현행 | | ⇒ | 개선 |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일괄 하도급사(1인) | 1년 | | 일괄 하도급사 | 2년 |
| 일괄 하도급사(2인 이상) | 8개월 |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| 1년6개월 | |
|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| 8개월 |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| 1년6개월 | |
|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| 6개월 | 불법 재하도급사 | 1년 | |
| 불법 재하도급사 | 4개월 | (신설) 지시·공모한 원도급사 | 2년 | |
| | | (신설) 건산법상 불법 하수급사 | 1년 | |
| | | (신설) 관리부실 원도급사 | 1년 | |

< 건산법상 하도급 참가 제한 >

| 현행 | | | ⇒ | 개선 |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| 1회 위반 | 2회 위반 | | | |
| 일괄 하도급사(1인) | 4개월 | 8개월 | 일괄 하도급사 | 2년 | |
| 일괄 하도급사(2인) | 2개월 | 4개월 | 동종 하도급사 | 1년6개월 | |
| 동종 하도급사 | 1개월 | 2개월 | 불법 재하도급사 | 1년 | |
| 불법 재하도급사 | 1~2개월 | 2~4개월 | (신설)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사 | 1년6개월 | |
| | | | (신설) 불법 하수급사 | 1년 | |

③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(건설법 개정)

○ (처벌대상) 처벌대상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확대

- (현황) 발주자, 하수급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도급자는 지시·공모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 가능*하여 사각지대 발생

*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묵인·해태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

- (개선) 하도급 관리의무*를 하지않은 원도급 업체, 적법성 확인 의무**를 하지 않은 하수급 업체, 불법행위를 강요한 발주자도 처벌

⇒ 의무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도급, 하도급 업체가 부담

* 하수급인의 근로자 고용여부,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 등

** 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재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

○ (처벌수준) 처벌수준을 상향하고, 개입정도·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

- (현황) 불법하도급시 처벌은 양도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(3년 이하 형벌)과 동일한 수준이고,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없음

- (개선) 불법하도급시 형벌을 강화(1년 이상 5년 이하)하되,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

< 처벌 강화 내용 > 신설 강화

| 현행 | | | 개선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처벌대상 | 징역 (벌금) | 영업정지 (과징금) | 처벌요건 (불법하도급 전제) | 징역 (벌금) | 영업정지 (과징금) |
| 발주자 | 없음 | 없음 | 강요 | 3년이하 (3천만원 이하) | - |
| 원도급 | 지시·공모 | 3년이하 (3천만원 이하) | 지시·공모 | 1년이상 5년이하 (1천~5천만원) | 2년이하 (도급액 40%) |
| | 묵인·해태 | 없음 | 관리의무 미이행 | 1년이하 (1천만원 이하) | 6개월이내 (도급액 20%) |
| 하도급 | 3년이하 (3천만원 이하) | 1년이하 (도급액 30%) | 별도사유 없음 | 1년이상 5년이하 (1천~5천만원) | 2년이하 (도급액 40%) |
| | | | 부실시공+사망 | 무기 또는 3년 이상 | 등록말소 |
| 하수급 | 없음 | 없음 | 확인의무 미이행 | 1년이하 (1천만원 이하) | 6개월이내 (도급액 20%) |

④ 등록말소 강화 - 원·투 스트라이크 아웃도입(건산법 개정)

- (현황) 불법하도급(일괄, 동종, 재하도급)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(3진 아웃제)를 실시 중이나,
 -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만 3진 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, 5년 이내 3번의 처분은 조사기간 등을 고려 시 실효성 부족
- (개선) 등록말소 대상을 확대하고, 원·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
 - (대상 확대) 불법하도급 적발시 하도급사 뿐 아니라 원도급사(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) 및 하수급사(적법성 확인의무 미이행)도 포함
 - (기준 강화) 3진 아웃제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(10년간 2회)으로 강화하고,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(즉시 등록말소)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|--|
| 현행 | ·3진 아웃제(5년간 3회 위반) - 하도급사(건산법·하도급법 상 하도급규정 위반) |
| 개선 | ·투 스트라이크 아웃(10년간 2회 위반) - 원도급사(지시·공모, 관리의무 미이행), 하도급사, 하수급사(확인의무 미이행) |
| | ·원 스트라이크 아웃(불법하도급+부실시공+사망사고) - 원도급사(지시·공모), 하도급사, 하수급사(부실시공 당사자) |

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(건산법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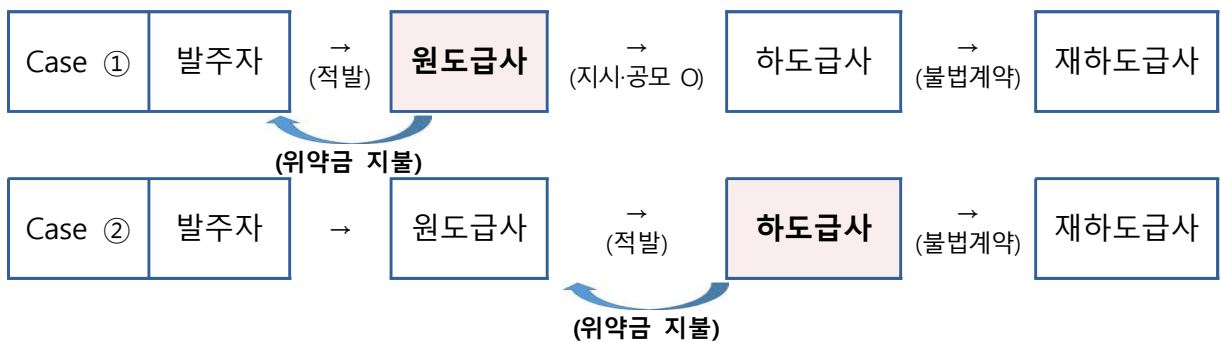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책임 발생
- (개선)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
 - * 현재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(부당위탁취소 등)에 대해 3배까지 배상
 - 원도급자가 지시·공모한 경우는 10배,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배 부과

3. [경제적 이해관계↓] 시공사 간 상호 감사·견제 유도

① 불법하도급시 위약금 부과 - 발주자, 원도급사의 적발유인 제고[건산법 개정]

- (현황) 발주자·원도급사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·행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
- (개선) 발주자,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 업체에게 위약금 청구 권한을 부여
 - 해당공사 도급금액(원도급 또는 하도급금액)의 10%*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, 해당업체와 계약해지권도 부여

*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 매매대금의 10%를 위약금으로 산정



②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및 신고포상금 도입 - 내외부 신고 유도[건산법 개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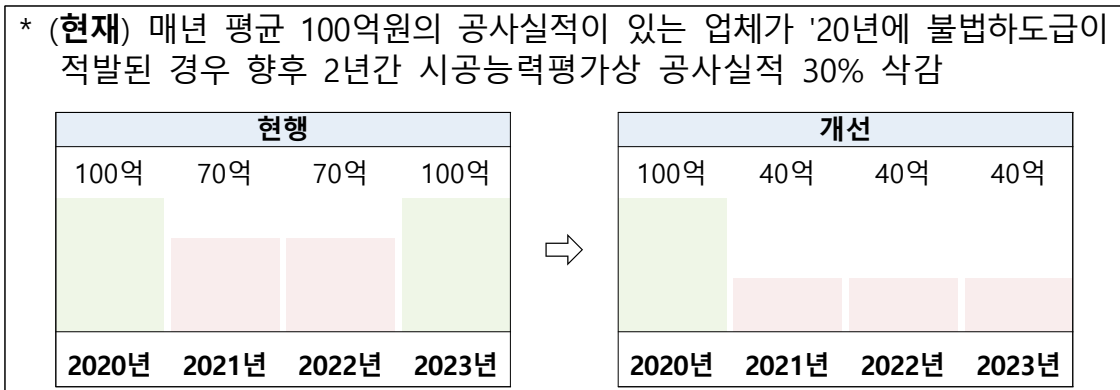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불법하도급은 당사자들 간에 공모로 이루어져 당사자 신고가 중요하나, 신고시 함께 처벌을 받아 신고에 소극적
- (개선)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시공 관계사(원·하·재하도급)의 임직원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·면제
 - *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허위신고 리니언시 : '17.1월~'20.12월 5,614건 적용
 - 공정거래법 상 담합 리니언시 : '17.1월~'20.12월 150건 적용
 -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, 그 외에는 감경
 -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외부신고도 활성화

③ 불법하도급시 시공실적 차감 확대(건설법 시행규칙 개정)

- (현황)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의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(직전 3년간 실적 평균)의 30% 차감(예 : 100억→70억)

* A회사가 B회사에 불법하도급을 준 경우 A회사 공사실적으로 제출

- (개선) 실적 차감비율을 향후 3년간 60%로 확대(예 : 100억→40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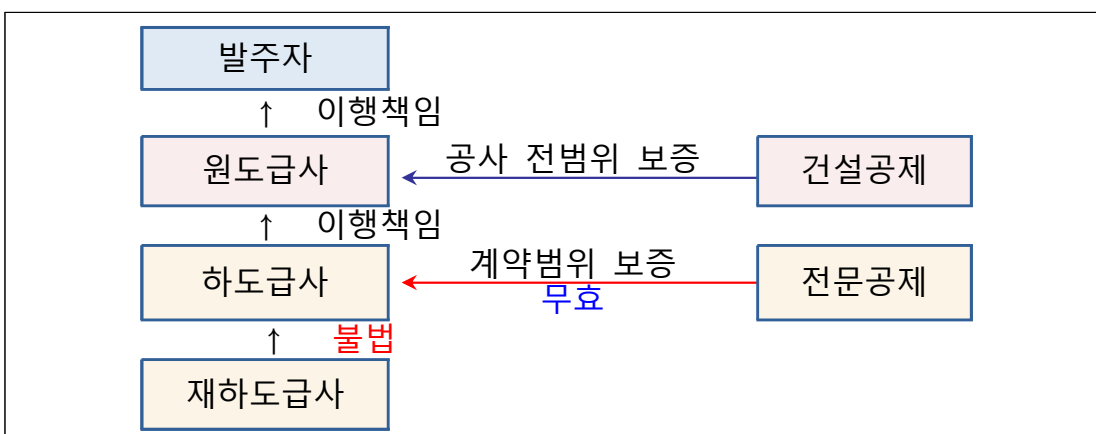
④ 불법 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(조합 보증약관 개정)

- (현황) 원도급사는 하도급사가 불법재하도급을 취도 하도급사 보증으로 하자책임 회피가 가능해 불법재하도급 관리 유인이 없음

- (개선) 원도급사가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, 불법재하도급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 무효화

- 이 경우 원도급사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, 자기책임으로 의무이행

* 다만, 발주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 유지



V. 향후 추진계획

1. 기본방향

- 이번 대책의 조기확산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
- 법률은 '21.8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, 연내 개정 완료 추진
 -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공포 후 즉시시행
- 시행령은 '21.12월에 개정완료 및 즉시시행

2. 세부과제

- 발주처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
 -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⇨ **건설산업기본법 개정**
 - 민간하도급 관리, 건설기술인 관리강화,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범위 축소 ⇨ **건산법·주택법·건축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**
-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
 - 특사경 도입, 입찰참가제한(대상확대), 등록말소 확대, 처벌 강화,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⇨ **사법경찰직무법, 국가계약법, 건산법 개정**
 - 입찰참가제한(기간연장) ⇨ **국가계약법·건산법 시행규칙 개정**
- 시공사간 상호 감시·견제 유도
 - 위약금 청구권, 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⇨ **건산법 개정**
 -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⇨ **건산법 시행규칙 개정**
 -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⇨ **공제조합 약관 개정**

참고 1

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요약

| 추진과제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| |
| ①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| ▪ 민간공사 감리가 하도급 적법여부 검토 후 발주자 보고 |
| ②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| ▪ 1억 이상 공공·민간공사 계약시 계획서 제출 |
| ③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| ▪ 기술인 1명이 관리가능한 5억 미만 현장을 3→2개 축소 |
| ④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| ▪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조기 확산 및 키스콘 연계 |
| 2.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| |
| ①특별사법경찰 도입 | ▪ 국토부 및 지자체에 특사경 도입 |
| ②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| ▪ 제한대상 : 하도급사 → 하도급사, 원도급사, 하수급사 ▪ 제한기간 : 최대 1년 → 최대 2년 |
| ③처벌대상 확대·수준 강화 | ▪ 처벌대상 : 원·하도급사 → 발주자, 원·하도급사, 하수급사 ▪ 처벌수준 : 3년 이하 징역/1년 이하 영업정지 →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,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|
| ④등록말소 강화 | ▪ 말소대상 : 하도급사 → 하도급사, 원도급사, 하수급사 ▪ 말소기준 : 투 스트라이크 아웃 (10년내 2회) 원 스트라이크 아웃 (사망사고시) |
| 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| ▪ 사망사고시 피해액의 10배 이내 배상 |
| 3. 시공사간 상호 감시·견제 유도 | |
| ①위약금 청구권 도입 | ▪ 피해주체가 불법행위 하도급사에 위약금 청구(10%) |
| ②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 | ▪ 업체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 감경·면제 ▪ 불법하도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|
| ③시공실적 차감 | ▪ 2년간 실적 30% 차감 → 3년간 60% 차감 |
| ④하자보증 무효화 | ▪ 불법재하도급 발생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 무효화 |

참고 2

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

| 추진과제 | 조치사항 | 추진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.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| | |
| ①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|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| '21.12 |
| ② 건설기술인 관리강화 |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| 건산법 시행령 개정 | '21.12 |
| 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| 건산법 시행령 개정 | '21.12 |
| ④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 | 인센티브 마련 | '21.12 |
| 2.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| | |
| ① 특별사법경찰 도입 |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②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| 국가계약법·건산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|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| '22.6 |
| ③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|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④ 등록말소 확대(삼진 아웃제 개선 등) |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|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3. 시공사간 상호 감시·견제 유도 | | |
| ① 위약금 청구권 도입 |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② 리니언시 및 신고포상금 |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| '21.8 |
| ③ 불법하도급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 |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| '21.12 |
| ④ 불법재하도급시 하자보증 무효화 | 공제조합 약관 개정 | '21.10 |

참고 3

대책 전후 광주 붕괴사고의 처벌 내용 변화

| 구분 | | 입찰참가제한 | | 행정벌 | | 등록말소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원도급 | 하도급 | 징역(벌금) | 영업정지 | |
| 원도급사 | 지시·공모 시 | - | - | 3년이하(3천만원) | 8개월 | - |
| | 목인·해태 시 | - | - | - | 과태료 500만원 (1차 위반) | - |
| 하도급사 | | 1년 (일괄하도급) | 8개월 (일괄하도급) | 3년이하 (3천만원 이하) | 8개월 | 3진 아웃제 (5년내 3회 적발시) |
| 재하도급사 | | - | - | - | - | - |



| 구분 | | 입찰참가제한 | | 행정벌 | | 등록말소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원도급 | 하도급 | 징역(벌금) | 영업정지(과징금) | |
| 원도급사 | 지시·공모 시 | 2년 | - | 1년이상 5년이하 (1천~5천만원) | 16개월 | ·원 스트라이크 아웃 (사망사고) |
| | 관리의무 미이행 시 | 1년 | - | 1년이하 (1천만원 이하) | 6개월 | - |
| 하도급사 | | 2년 (일괄) | 2년 (일괄) | 무기 또는 3년 이상(사망사고) | 16개월 | ·원 스트라이크 아웃 (사망사고) |
| 재하도급사 | | 1년 (불법하수급) | 1년 (불법하수급) | 1년이하 (1천만원 이하) | 6개월 | ·원 스트라이크 아웃 (사망사고) |

※ 등록말소시 형사벌은 병과되나, 입찰참가제한·영업정지는 미적용